

화학물질 채취 방법

○ 확산 모니터



- »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이 확산되어 확산 모니터 내부의 활성탄 흡착 패드에 포집되는 원리의 시료채취기
- » 작고 가벼우며, 화학물질 취급동안 작업자의 몸에 부착하고 있어야 함

확산(Diffusion)이란? 서로 농도가 다른 물질이 혼합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같은 농도가 되는 현상

○ 화학물질 원액(벌크 시료)

- »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세척제에서 특정 물질의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원액 그대로 채취
- » 분석 가능한 성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**벌크 시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단 분석실 담당자의 확인 필요**
- » 벌크 시료 의뢰 시 **물질안전보건자료**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

안전보건공단 담당자 연락처

권역분석실	연락처	FAX
서울광역본부	02-6711-2828	02-6711-2839
인천광역본부	032-510-0563	032-510-0579
대전세종광역본부	042-620-5633	042-636-1938
부산광역본부	051-520-0621	051-520-0619
대구광역본부	053-609-0548	053-421-8624

알리미? 이것이 궁금해요!



Q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란?

- A** 근로자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공단에서 **무료로 제공**하는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직접 채취하고 결과를 안내받는 사업입니다.

Q 어떤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가요?

- A** 작업장에서의 취급물질 종류, 노출정도 및 관리방법 등을 알고 싶은 근로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Q 측정가능한 물질은 어떤 종류인가요?

- A** 현재 165종의 '휘발성 유기화합물'을 측정 가능하며, 홈페이지(www.kosha.or.kr/selfcheck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?

-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중에 휘발되어 악취(기름 냄새 등)를 발생시키며, 일반적으로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 신체에 들어와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.
- 대표적으로 세척제나 페인트 등에 함유된 노말헥산, 벤젠, 톨루엔 등이 있으며, 석유·화학·섬유·금속가공업종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유통되고 있습니다.

Q 측정 시료는 몇 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
- A** 1회당 20개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, 추가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

Q 알리미 측정으로 법적 작업환경측정을 대체할 수 있나요?

- A** 「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」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.



“내가 쓰는 물질,
이대로 써도 될까요?”



지금, 당신의 취급물질의
노출 정도를 알려드립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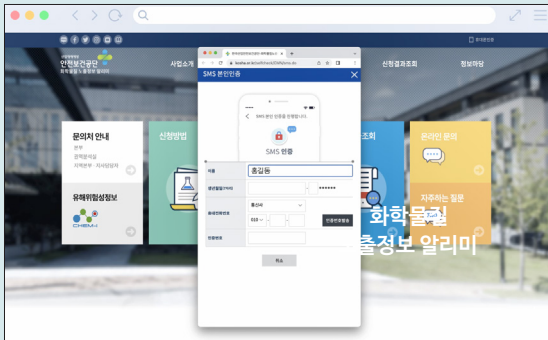
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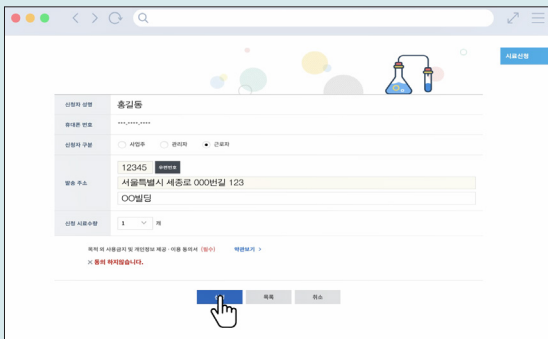
1 www.kosha.or.kr/selfcheck 또는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



2 로그인(휴대폰 번호로 인증)
»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가능



3 시료 신청
» 1회 20개까지 가능하며, 추가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



4 공단에서 접수 후 신청자에게 시료 배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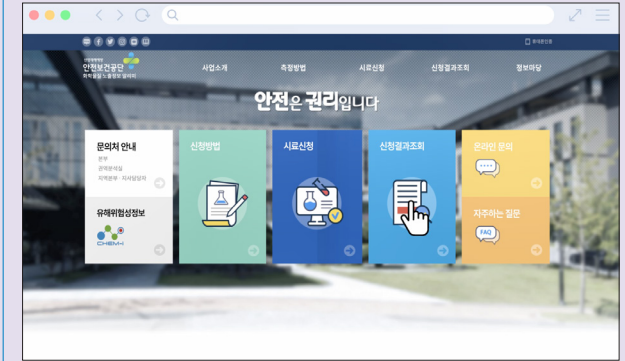
5 시료 수령 및 시료 채취
» 시료에 동봉된 안내문 또는 QR코드 영상에 따라 작업 중 시료 채취



6 시료를 밀봉하여 공단 분석실로 시료 발송(착불)
» 우체국택배(착불) 이용



7 시료접수 후 약 2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확인



분석결과서 보는 방법

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분석결과서

※ 분석결과서는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**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 조치 목적 외에는 사용될 수 없음**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본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(작업환경측정)에 따른 **작업환경측정이 아닌 노출을 알리미**로, 측정 상황에 따라 결과물일 뿐 분석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밀한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청자 :
□ 접수일자 : 2022.12.08
□ 분석결과 및 평가

연번	작업명	*채취시간(분)	분석물질	*노출수준	위험수준	*개선조치단계
1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크실렌	높음	■	현상태 유지 또는 개선
2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낮음	■	
3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에틸벤젠	매우 높음	■	즉시 개선
4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크실렌	매우 높음	■	
5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불검출		
6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불검출		
7	작업명 또는 근로자명	확인불가	유기화합물	불검출		

*노출수준: 낮음(기준대비 10% 미만), 보통(기준대비 10%~50%미만), 높음(기준대비 50%~100%미만), 매우높음(기준대비 100% 초과)
*위험수준: 작업환경측정 노출수준을 준용하기 위한 위험수준 단계임
*개선조치 단계: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조치의 시급성을 나타냄
*채취시간 확인불가: 채취시간이 '확인불가'일 경우, 7시간으로 추정하여 분석함

주의사항

» 「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」 분석 결과는 근로자의 근로 환경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.

» 또한 작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보호조치 목적 외 타 목적(분석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)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